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	1999.	3.	31.	총제결재	국심	6011-	217
개정	2000.	12.	30.	총제결재	국심	6011-	3
	2001.	10.	4.	총제결재	국외	6011-	815
	2002.	3.	18.	총제결재	국심	6011-	113
	2004.	8.	25.	총제결재	국제	6011-	587
	2006.	2.	16.	총제결재	외환조사팀-		37
	2007.	8.	1.	총제결재	국제기획팀-	1209	
	2007.	10.	16.	총제결재	외환심사팀-	773	
	2007.	12.	28.	총제결재	국제기획팀-	2102	
	2008.	1.	17.	총제결재	국제기획팀-	93	
	2008.	3.	20.	총제결재	국제기획팀-	486	
	2008.	10.	27.	총제결재	국제기획팀-	1948	
	2008.	12.	1.	총제결재	국제기획팀-	2254	
	2009.	3.	2.	총제결재	국제기획팀-	469	
	2010.	6.	22.	총제결재	국제기획팀-	984	
	2010.	7.	9.	총제결재	국제기획팀-	1146	
	2011.	7.	15.	총제결재	국제총괄팀-	864	
	2011.	7.	26.	총제결재	국제총괄팀-	939	
	2013.	1.	18.	총제결재	국제총괄팀-	85	
	2014.	12.	23.	총제결재	외환심사팀-	1564	
	2015.	1.	27.	총제결재	국제총괄팀-	78	
	2015.	6.	24.	총제결재	국제총괄팀-	480	
	2016.	3.	30.	총제결재	외환심사팀-	316	
	2017.	7.	18.	총제결재	외환회계팀-	1605	
	2020.	4.	7.	총제결재	국제총괄팀-	476	
	2022.	4.	18.	부총제대결	외환시장팀-	136	
	2024.	1.	2.	총제결재	국제총괄팀-	5	

##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 규정」 및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외국환은행등

### 제1절 외국환포지션 관리

**제2-1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① 외국환은행의 외국환포지션(「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른 외국환포지션중 종합포지션 및 선

물환포지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의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이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하며,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의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이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2.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의 선물자산잔액이 선물부채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하며,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의 선물부채잔액이 선물자산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 ② 외국환은행의 종합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와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 중 큰 것으로 산정하며, 선물환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에서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제2-2조(외국환포지션의 자산·부채의 범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한국은행 국제국장(이하 “국제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금융기관 외화대차대조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한도관리)** ① 외국환은행은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포지션한도는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③ 선물환포지션한도는 직전영업일로부터 과거 1개월 동안의 일별 선물환포지션잔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매영업일별로 관리한다.

④ 규정 제2-9조의제1항 및 제2항의 외국환포지션한도는 자기자본을 미달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대미달러 환율은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국제국장은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별도한도의 인정)** ① 규정 제2-9조의제2제3항에 따른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한 별도한도 인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은행에 대한 별도한도 인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별도한도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2-5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 ① 외국환은행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종합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매입분 및 외국환매각분은 종합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갭기금 및 제 적립금을 말한다)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
2.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에서의 영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국환매각분 및 외국환매입분
3.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외국환매입분
4. 외국환은행이 통화옵션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을 델타헤징 방식으로 자체 관리하는 경우 통화옵션거래 및 델타헤징 방식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매입분 또는 외국환매각분

② 외국환은행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선물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물환매입분 및 선물환매각분은 선물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갭기금 및 제 적립금을 말한다)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선물환매입분
2.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에서의 영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물환매입분
3.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선물환매입분과 외국환은행이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전 거래에 대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선물환매입분 또는 선물환매각분
4. 외국환은행이 통화옵션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을 델타헤징 방식으로 자체 관리하는 경우 델타헤징 금액에 상응하지 않는 통화옵션거래

## 제2절 예금

**제2-6조(계정별 예금의 종류)** ① 규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계정별 예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외계정 :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2. 거주자계정 :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3. 해외이주자계정 :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4. 비거주자 원화계정 :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다만,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은 당좌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한정한다.
  5.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6. 계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별도예금
-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개설할 수 있는 예금의 종류는 개설은행의 다른 원화예금의 종류와 동일하다. 다만, 양도성 예금증서는 제외한다.

## 제3절 외화대출 및 외화채무증권 투자

**제2-7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화대출”이란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을 말하며,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4-1>의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외화대출금”외에 국제국장이 정하는 대내외회사모사채를 포함한다.
2. “외화채무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으로서 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하고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국제국장이 정하는 대내외회사모사채를 제외한다.

**제2-8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제2-9조 및 제2-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환은행이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전대
2. 한국수출입은행의 외화대출업무

**제2-9조(외화대출의 용도제한)** ①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한 외화대출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
  2.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은 2010년 6월 30일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해당 외국환은행의 국내 시설자금 대출잔액을 한도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국내 시설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2-10조(외화채무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외국환은행은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외화채무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1조(심사 및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은 외화대출 취급시 또는 외화채무증권 투자시 제2-9조 또는 제2-10조에 따른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 또는 투자 후에는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와 유용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2-12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대출 등)** 이 절의 규정은 외국환은행 이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행하는 외화대출 또는 외화채무증권 투자에 준용한다.

#### 제4절 외환건전성부담금

**제2-13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범위)** 영 제21조의4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채계정(이하 “외화부채등”이라 한다)에서 외화예수금과 규정 제2-11조의2 및 규정 제2-23조의3의 제외대상 외화부채계정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1>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2.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2>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계정 처리기준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제4-1>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4. 「어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5-1호>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제2-14조(가중평균 만기의 산정방식)** ① 영 제21조의3의 가중평균 만기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을 잔존 만기에 따라 1년 단위로 구분한 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잔존 만기 적용 시 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text{가중평균만기} = \frac{\sum \text{잔존만기} \times \text{잔존만기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금액}}{\text{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총액}}$$

② 가중평균 만기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2-15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산정방식)** ① 영 제21조의4제1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제2-16조의 잔액산정 대상기간 중 잔존 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월말 잔액의 합을 12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을 산정할 경우 영 제21조의2제2호의 각 목의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계약만기가 도래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연장 해당분도 포함한다.

③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공제액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하 “공제전 잔액”이라 한다)에서 영 제21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공제후 잔액”이라 한다)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으로 한다. 다만,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부담금 감면기간에 대한 공제후 잔액은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일별 잔액의 평균 금액에서 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영 제21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④ 영 제21조의4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영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추가부담금 산정을 위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증가분은 추가 부과요율 적용기간 동안 일평균잔액에서 추가 부과요율 적용일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잔액을 차감한 잔액에 적용기간 일수를 곱한 후 365(윤년일 경우 366)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잔액 증가분을 계산한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⑥ 잔액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2-15조의2(공제액 산정방식)** ① 영 제21조의4제2항제1호의 [별표 1] 제2호의 계산식에서 해당 사업연도 외화예수금의 월말잔액의 연평균금액은 외화예수금을 같은 별표 제3호의 잔존 만기별로 구분하고, 제2-16조의 잔액산정 대상기간 중 외화예수금의 월말 잔액의 합(이하 “외화예수금 적수”라 한다)을 12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영 제21조의4제2항제1호의 [별표 1] 제2호의 계산식에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외화예수금 월말잔액의 연평균금액의 증감액은 외화예수금을 같은 별표 제3호의 잔존 만기별로 구분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영 제21조의2의 부담금납부의무자(이하 “부담금납부의무자”라 한

다)가 신설된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직전 사업연도 대비 외화예수금 월말잔액의 연평균금액의 증감액 =  
(해당사업연도의 외화예수금 적수 - 직전사업연도의 외화예수금 적수)/12

③ 영 제21조의4제2항제1호의 [별표 1] 제3호의 정기에금과 그 밖의 예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에금 : 제2-13조 각 호에 따른 외화예수금 중 외화정기에금과 외화정기적금
2. 그 밖의 예금 : 제2-13조 각 호에 따른 외화예수금 중 외화정기에금과 외화정기적금을 제외한 예수금

④ 영 제21조의4제2항제1호의 [별표 1] 제3호 가목의 잔존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기 1년 이하 : 365일 이내
2. 만기 1년 초과, 3년 이하 : 366일~1,095일
3. 만기 3년 초과, 5년 이하 : 1,096일~1,825일
4. 만기 5년 초과 : 1,826일 이상

⑤ 규정 제10-20조에 따른 원화·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 또는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서는 규정 제2-11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산정방식은 해당 사업연도 중 원화·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 또는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된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 선정된 기간(개월 단위로 산정한다)을 12개월로 나눈 비율만큼만 공제한다.

⑥ 외화예수금 적수를 계산할 때 시가평가회계를 적용하는 외화예수금은 원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16조(잔액산정 대상기간)** ① 부담금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잔액산정 대상기간은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부담금납부의무자가 신설된 경우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잔액산정 대상기간은 외국환업무 등록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잔액산정 대상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1.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파산선고, 해산 및 업종전환의 경우 : 인가 취소일, 파산선고일, 해산등기일, 업종전환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
2.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 폐쇄의 경우 : 국내지점 폐쇄일

**제2-17조(부담금의 산정)** 부담금납부의무자가 사업연도 종료 후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정상부담금 : 제2-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잔액에 영 제21조의3에 따른 부과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기간과 부담금 감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 금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각 기간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일할 계산한다)을 각각 곱하여 합산한 금액

2. 추가부담금 : 제2-15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잔액 증가분에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추가 부과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정정부담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업연도의 제1호 및 제2호 부담금 산정대상 월말 평균잔액과 일평균잔액 및 부과요율을 정정하여 산정한 금액

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이 계약만기일 이전에 상환 또는 청산되는 경우  
나. 외화예수금이 계약만기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

다. 추가 부과요율이 사업연도 종료일(이하 “결산일”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기간에 적용되어 추가 부과요율 적용이 완료된 시점까지의 일평균 잔액 증가분이 변경되는 경우

**제2-18조(부담금보고서)** ① 부담금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보고서를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분기보고서 : 외화부채등의 월말 잔액을 제2-14조부터 제2-16조까지의 기준 등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말 이내에 제출

2. 연간보고서

가. 분기보고서의 월말 잔액의 합을 12로 나누고, 제2-17조에 따른 부담

금을 산정하여 결산월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나. 제3호에 따라 정정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2-28조에 따라 부담금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보고서를 수정하여 동시에 제출

3. 정정보고서 : 제2-17조제3호에 따른 정정부담금의 세부 산출근거를 결산월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② 부담금납부의무자는 연간보고서 제출 시 사업연도의 결산자료 등을 반영한 확정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납부의무자는 제2-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월로 간주하여 부담금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국장은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보고서와 관련한 세부자료를 서면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영 제21조의2제7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에 규정 제2-23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때 필요한 사항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⑥ 영 제21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분기보고서 제출 시기는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2-19조(납부고지)** ① 국제국장은 부담금납부의무자의 결산월 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납부대상 부담금의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제국장에게 납부고지서의 발급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③ 분할납부의 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을 위한 기준일이 되는 납부고지일은 국제국장이 정하는 납부고지 방법중 어느 하나로 고지한 날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④ 국제국장은 제2-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 후 4개월 이내에, 제2-25조에 따라 분할납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취소 결정일이 속한 월에, 제2-28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조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정일이 속한 월에 각각 부담금을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납부고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2-20조(부담금·가산금의 납부 및 납부기한)** ① 부담금납부의무자는 제2-19조에 따라 납부고지된 부담금을 결산월 후 5개월 이내(이하 "납부기한"이

라 한다)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제4항의 경우에는 국제국장이 납부고지한 월의 다음 월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영 제21조의8의 산식에 따른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더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납부기한 종료일이 뉴욕 외환시장 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21조(납부통화)** ① 제2-20조의 부담금 및 가산금(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은 미달러화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는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원화 납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화 납부에 적용되는 환율은 국제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2조(납부방법)** ① 부담금 및 가산금(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외화예수금계정을 통하여 납부신청 및 납부신청액에 해당하는 외화자금 예치신청을 각각 하여야 한다.

② 가산금(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은 부담금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납부신청은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증가산금을 포함한다)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1영업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외화자금 예치신청은 부담금 납부예정일의 외화자금 예치신청 입력 종료시각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⑤ 제2-21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원화로 납부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좌예금계정이 없는 금융회사등은 당좌예금계정이 있는 금융회사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⑥ 원화 납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3조(분할납부)** ① 부담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9조의 납부고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사업여건의 악화로 경영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 부담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제국장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대상 부담금의 10분의 1(제1차분)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0분의 9(제2차분)는 납부기한 후 7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국제국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할납부 승인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 및 그 밖에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제국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자료를 서면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24조(분할납부에 관한 담보)** ① 국제국장은 제2-23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종류는 국제,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으로 하며, 이러한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국제국장이 「공개시장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 제2조에 따른 당좌예금을 담보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5조(분할납부의 취소)** 국제국장은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부담금납부의 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이에 관계되는 부담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제1차분 또는 제2차분 부담금 납부금액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보전에 필요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분할납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 파산선고, 해산, 업종전환 또는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 폐쇄의 경우

**제2-26조(독촉장 발급 및 가산금 고지)** ① 국제국장은 부담금납부의무자가 제2-20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의8에 따른 가산금(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한다.

**제2-27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부담금납부의무자가 제2-26조의 독촉

장에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대상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채납 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강제징수한다.

**제2-28조(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등)** ①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영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국제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다시 부과·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국제국장은 제2항의 부담금의 조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 금융회사 등에 입점하여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국제국장은 영 제21조의10제4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 및 가산금(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시 부과·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금 및 가산금(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9조(기한의 특례)** 제2-19조, 제2-20조, 제2-23조, 제2-28조의 납부고지, 납부 기한, 분할납부 신청 및 결과 통지, 이의신청·결과 통지 및 부담금의 재부과·징수에 따른 기한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의11에 따른 기한의 특례를 적용한다.

## 제5절 외국환거래 촉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2-30조 (원화·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① 규정 제10-20조에 따른 원화·위안화 시장(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조성자는 외국환은행으로서 국제국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법령준수 요건
2. 재무건전성 요건
3. 신용등급 요건

② 국제국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원화·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 선정을 신청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국제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조성능력을 평가하여 이를 선정한다.

③ 국제국장은 1년 단위로 원화·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를 선정한다. 다만, 국제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이전이라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④ 국제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외국환은행 및 외국환중개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제2-31조(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 선정)** ① 규정 제10-20조에 따른 원화·미화 시장(원화·미화 현물환시장 및 스왑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선도은행은 외국환은행으로서 국제국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법령준수 요건
  2. 재무건전성 요건
  3. 신용등급 요건
  4. 외환시장·외화자금시장에서의 최소 거래비중 요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제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
- ② 국제국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국제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전연도 원화·미화 현물환거래 및 스왑거래 실적을 평가하여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을 선정한다. 다만, 국제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직전연도 이전의 기간을 평가대상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 ③ 국제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기간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을 선정한다. 다만, 국제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이전이라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④ 국제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외국환은행 및 외국환중개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제2-32조(의무)** ① 시장조성자는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에서 경쟁적 호가를 연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② 외국환은행 및 외국환중개회사는 국제국장이 제2-30조제4항, 제2-31조제4항에 따라 요청하는 원화·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 또는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2-33조(선정 취소)** 국제국장은 원화·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 또는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된 외국환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30조제1항, 제2-31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제2-32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호가의 담합 등으로 외환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6절 청산은행

**제2-34조(지정)** ① 규정 제10-21조에 따라 한국은행총재는 청산업무관련 조직 및 인력체계, 외환전문성, 결제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중에서 청산은행을 지정한다.

② 국제국장은 청산은행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1항의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및 외국환중개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제2-35조(자료제출)** 청산은행의 장은 국제국장이 규정 제10-21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36조(지정 취소)** 한국은행총재는 청산은행으로 지정된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를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청산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3-1조(재무건전성)** 영 제7조제8호 및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인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적정성 : 지침 제1-3조제1호에 따른 업종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에 상응하는 금융업 :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응하는 금융업 : 가목에 따른 기준 또는 해당 금융업 인가를 받은 본국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국제신용등급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장기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것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국제국장은 지침 제2-2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4-2조, 제6-1조 등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정보 중 지침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래내역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정보와 지침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3-3조(감독)** ① 국제국장은 지침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규정 및 지침, 한국은행의 규정·명령 및 지시에 대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② 국제국장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른 법령 등을 위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취소 등 제재 건의

**제3-4조(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① 영 제35조제4항제1호가목, 지침 제6-1조제2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는 국제국장이 서면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국제국장은 실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서면검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정보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서면검사로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적절하게 감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서면검사 및 제2항에 따른 실지검사의 기준·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3-5조(관계인에 대한 검사)** ① 영 제35조제4항제1호가목, 지침 제6-1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검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국제국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요구 또는 공동검사 참여 방법으로는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적시에 실시할 수 없어 검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단독으로 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제국장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등의 기준·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 제4장 외국환중개회사

**제4-1조(외환시장 거래질서 유지 의무)** 외국환중개회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신속·정확한 중개를 함으로써 외환시장의 거래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제한)** 외국환중개회사는 거래의 중개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중개하지 않고 자기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어 거래를 성립시켜서는 아니된다.

**제4-3조(매매기준율 등 산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환율고시업무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은 규정 제1-2조제7호에서 규정된 매매기준율과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하고 매일 영업개시 30분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및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보고)**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은 중개거래 현황 및 중개수수료 결정내용 등을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자료제출)** 국제국장은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감독)** ① 국제국장은 규정 제2-4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규정 및 지침, 한국은행의 규정·명령 및 지시에 대한 외국환중개회사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② 국제국장은 외국환중개회사가 제1항에 따른 법령 등을 위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외국환중개회사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취소 등 제재 건의

**제4-7조(검사)** ① 영 제35조제4항제1호나목, 규정 제2-42조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검사는 국제국장이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 방식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 제5장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

**제5-1조(신고등 기준)** ① 영 및 규정에 따라 위탁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 제18조제3항, 열 제29조제3항, 규정 제9-3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② 영 및 규정에서 정한 신고에 관한 처리절차는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5-2조(사후관리)** 규정 제1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5-3조(위임)** 제5-1조에서 규정된 허가, 신고수리 또는 신고의 업무에 필요한 전결구분, 처리기간, 위임지역본부, 제출서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 제6장 외국환거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1조(자료제출 요구)** ① 국제국장은 영 제39조제7항 및 규정 제10-14조제2항에 따라 외환거래 정보의 신속한 집중과 집중된 자료의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 및 관계기관(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출예정일자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검사 요구 및 공동검사 참여 요구)** ① 영 제35조제4항제1호다목 및 마목,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금융기관 및 부담금납부의무자,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에 한국은행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영, 규정, 외환시장과 관련한 한국은행 규정 및 조치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외화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으로 외화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금융기관 등의 외환건전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외환시장의 과다한 수급 불균형, 환투기, 불공정·과당경쟁, 불·탈법거래 등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
4.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계정별 잔액산정 정확성, 부담금 납부 정확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외환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요구 또는 공동검사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 목적, 기간, 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 외국환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제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중 영 제35조제4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사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3조(검사원의 선정 및 의무·권한)** ① 금융감독원장과의 공동검사에 참여하는 직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국제국 및 공동검사 요구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직원으로 하며, 검사원의 선정 및 검사반의 구성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② 검사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친절·겸손한 자세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 등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접대를 받을 수 없다.

③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동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내역 중 특이거래 및 외국환거래법령상 위규거래 등(이하 “중점 검사대상거래”라 한다)에 대해 그 사실의 확인 및 거래 주체와 목적 파악 등을 위한 검사대상자 또는 검사대상기관 소속 임직원 등 관계자(이하 “피검사자”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2. 피검사자에 대한 출석 및 진술의 요구
3. 그 밖에 검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6-4조(검사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 요구)** ① 제6-2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요구를 한 경우 국제국장은 그 검사결과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송부받아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6-2조에 따라 한국은행 직원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 국제국장은 한국은행의 검사결과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최종 검사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필요시 보고할 수 있다.

③ 국제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한 후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해당 피검사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검사 사후관리)** ① 국제국장은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후 금융감독원장의 조치내용 등을 점검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6-4조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한 경우 국제국장은 금융감독원장의 시정조치 결과를 송부받아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장 외국환거래 보고 대상자

**제7-1조(검사)** ① 영 제35조제4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고 대상자(외국환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 및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는 국제국장이 실시한다.

② 국제국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한 검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2조(제재 등 조치)** ① 국제국장은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자가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경위서 제출 요구
  3.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의 정지 또는 제한
- ② 국제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 내역을 각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장 보고

**제8-1조(보고)**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부담금납부의무자 또는 보고 대상자가 규정 및 이 세칙의 시행과 관련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7조제3항제11호, 영 제37조제3항제13호바목 및 규정 제10-3조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국제국장이 정한다.

## 제9장 보칙

**제9-1조(위임)**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부칙 <1999. 3. 31>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9. 4. 1.부터 시행한다
- ②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업무 취급세칙」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본다.
- ③ (거래외국환은행 중복지정 확인에 대한 경과조치) 외환정보집중기관이 거래외국환은행 중복지정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확인 등의 보고 및 중복지정 관련 조치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종전 「외국환관리업무취급세칙」을 적용한다.
- ④ (외국환관리업무취급세칙의 폐지) 「외국환관리업무취급세칙」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00. 12. 30>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②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에 종전의 세칙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본다.

(중략)

부칙 <2008. 3. 20>

- ① (시행일) 2008. 3.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기한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8월 10일 이전에 행한 외화대출중 제2-9조에 해당하는 외화대출로서 만기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외화대출에 대하여는 만기도래일로부터 2년간 제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8. 10. 24>

- ① (시행일) 2008. 10.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용도제한에 관한 특례) 이 세칙 시행일 전에 체결된 국내 수출기업의 환헤지 목적 통화옵션거래에 따른 외화결제자금에 대하여는 제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8. 12. 1>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배제) 이 세칙 시행일 현재 제2-9조에 해당하는 외화대출과 그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대출에 대하여는 제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9. 3. 2>

이 세칙은 200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22>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취급한 외화대출과 그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외화대출에 대하여는 제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0. 7. 9>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② (유예기간중 한도관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0-14호)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에 필요한 세칙은 위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 ③ (적용유예)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0-14호)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일까지는 선물환포지선한도를 매 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부칙 <2011. 7. 15>

이 세칙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26>

이 세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18>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15조제2항 및 제3항, 제2-15조의2, 제2-17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사업연도의 부담금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2. 23>

이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7>

이 세칙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24>

-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①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제2-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간 중 월말 잔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 ② 외국환은행의 경우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15년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종전 세칙의 제2-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간 중 일별잔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 ③ 영 제21조의2제7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 2015년 사업연도의 부담금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항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로 판단한다.

제3조 (부담금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① 영 제21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2015년 사업연도의 부담금은 부칙 제2조제1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개정된 규정의 부과요율을 곱하되, 2015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개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추가로 곱하여 산정한다.

② 외국환은행의 2015년 사업연도의 부담금은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및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 금액을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 후 두 기간의 부담금 금액을 2015년 사업연도 기간 대비 해당기간 비중(2015년 6월 30일 이전에 대해서는 일기준, 2015년 7월 1일 이후에 대해서는 월기준을 적용한다)을 각각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4조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외국환은행의 공제액 산정 특례)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만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는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2-1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을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2016. 3. 30>

이 세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8>

이 세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7>

이 세칙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20>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사업연도 부담금 산정에 대해서는 제2-1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사업연도 부담금 산정에 관한 종전의 세칙에 따른다.

부 칙 < 2024. 1. 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에 관한 적용례) 제2-3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에 선정하는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